제538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

회 의 록

2016. 3. 11.(금)

국 무 조 정 실

규 제 조 정 실

1. 회의개요

○ **일　　시** : 2016년 3월 11일(금) 16:00~17:30

○ **장　　소** :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

○ **출석위원**(7)

- 민간위원 : 이원호, 김민호, 전병준, 원숙연

- 정부위원 : **국무조정실**(규제심사관리관)**행정자치부**(정책기획관), **법제처**(사회문화법제국장)

2. 상정안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비고
2016-75	환경부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	**의결안건**

3. 심의 · 의결사항

가.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- 환경부 (제2016-75호)

1 토지 등의 수용·사용

□ 심의내용

○ 수생태계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

□ 주요발언

○ (OOO위원) 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시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, 개별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됨

○ (OOO위원) 지방하천의 경우, 토지 매수협의가 안되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토지수용이 필요함

○ (OOO위원)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, 토지 수용·사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환경부 의견은?

⇒ (환경부) 하천유로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가 하천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, 토지소유자가 이런 토지를 방치할 경우 매수협의 조차 어려운 경우 사업이 불가하므로 수용·사용이 필요함

□ 심의결과 : 원안동의

○ 공익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차질 방지 등의 필요성과 매수협의 불가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적정성을 인정, 원안에 동의함

2 과태료

□ 심의내용

○ 고장난 측정기기의 방치 및 관리·운영기준 미준수, 배출량조사결과의 미제출 및 필요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

□ 주요발언

○ (OOO위원) 실제 지방 현장에서는 배출량조사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를 덜 내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환경부 개정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○ (OOO위원) 근로자 수 등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적용 유예가 가능한 지?

⇒ (환경부) 근로자 수 등 사업장의 규모가 적다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제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로 규제 유예 적용시 문제 발생 우려

○ (OOO위원) 동 법률 개정안의 과태료 조항은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때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

□ 심의결과 : 원안동의

○ 측정기기 운영·관리기준 준수를 통한 수질보전 및 배출량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, 원안동의함